

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79,235,910	14,377,077
일반회계	461,311,948	13,839,358
특별회계	17,923,962	537,719
기타특별회계	17,923,962	537,719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60,022	16,801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0,584	618
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	6,573,149	197,194
지하수관리특별회계	855,239	25,657
주차장특별회계	9,914,968	297,44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,485,629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·시비 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(명시이월, 계속비이월 포함)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

※ 의존자원 표시

국고보조금→국    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→지      기금→기      시비→시      특별교부세→특세

특별조정교부금→특금